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8. 26.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81호로 2024년 8월 12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 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 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유산, 봄꽃·불꽃 등 대규모 축제,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함.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증진되고,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 진정한 문화도시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본 조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의 근간이 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안 제4조)
- 라.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4. 8. 13. ~ 8. 18.):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의 뜻을 정의하고, “문화다양성”,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¹⁾를 따름.
 - 안 제6조(실행계획) 및 제7조(실태조사)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하여 공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부터 안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 검토 결과

- 지난 2010년 제33차 UNESCO(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²⁾」이 채택되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라 한다)(시행. 2014.11.29.)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토대를 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소득계층·세대 간 문화차이, 노인·장애인·이주민 등 소수문화 등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임.
-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관련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³⁾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형식을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조사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문화다양성 보호와 증

2) 문화적 창의성이 인류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①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중, ②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규제·지원조치, ③당사국 정부 간 위원회의 구성, ④국가보고서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진을 위한 지원)4)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보임.

- 아울러,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한편, 우리 구(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시행. 2014.4.24.)를 제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는 다문화 정책도 내포하고 있는바, 추후 행정·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4)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국가 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